

# 마리나타 비전교회 조직 및 운영규칙 (수정안)

Ver 2.6 Jan. 2023

마리나타 비전교회(이하 본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이 지역과 열방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큰 테두리는 본교회가 소속한 미국 장로교회(PCA)의 헌법을 따르지만, 아래와 같이 한국 장로교회의 특성과, 본교회가 시행하는 목장사역의 원칙에 따라 “조직 및 운영규칙”을 작성한다.

이 규칙의 목적은 교회 운영을 법조문으로 고정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달리,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운영될 수 없다. 교회는 머리되신 그리스도에 연결된 유기체로서,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당회의 치리아래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 항상 열려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인식한다.

## I. 당회 조직

### 담임목사

본교회의 목표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담임목사는 “사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사역을 담당한다. 담임목사가 가장 핵심적으로 전념해야 할 사역은 아래와 같다.

- 1) 말씀연구 및 선포
- 2) 기도
- 3)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시킴.
- 4) 본교회의 visionary로서, 성령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고 최고 리더십을 행사한다.

본교회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그러나 개인 형편에 따라 정년이 되기 전에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다. 매 7년째 안식년을 가질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안식일로 분할해서 가질 수도 있다. 후임 담임목사의 청빙은 전적으로 당회가 주관하며 청빙위원은 모두 당회원으로 구성된다.

### 당회

당회는 담임목사(당회장)와 본교회에서 선출된 시무장로들(당회원)로 구성한다. 당회는 “집단 의사결정기관”(예: 기업의 이사회처럼 모든 업무를 당회가 결정)이 아니다. 모든 초원 및 각종 사역부는 업무분담 원리에 따라 초원지기 및 코디들이 담임목사와 긴밀하게 연결하여 사역하는데, 당회는 필요시 교회 전체적인 사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당회의 성격은 담임목사의 목회를 지원하고 동역하는 기관이다. 본교회의 당회가 담당할 사역은 아래와 같다.

- 초원내 목양사역의 조정
- 교회 재산의 획득 및 관리
- 예산수립 및 집행의 감독
- 각 사역부서들 간의 업무 조정
- 중요한 대외관계

- ▶ 기타 담임목사의 목회 및 선교사역을 돕고 지원함

정기당회는 분기별로 한번이상 모여야 하며, 필요시 당회장은 임시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시무장로

본교회 시무장로는 본교회의 인수집사로 섬기는 초원지기 중에서 선임하는데 공동의회에서 2/3이상의 표결을 받아야 한다. 시무장로의 주된 사역은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하여 담임목사와 동역하는 것으로,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하고, 도리 오행나 도덕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교우들을 심방하고 교훈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사역이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사역이 포함된다.

- ▶ 자신의 초원을 목양하는 사역
- ▶ 각 사역부서의 코디로 섬기는 사역
- ▶ 각종 위원회에서 섬김 (예: 예산 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 ▶ 대외적인 활동 (예: 노회의 총대로 섬김)

시무장로의 임기는 10년 단임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임기 마지막 해에 본인 외 당회원이 전원 일치하여 가결할 경우), 공동의회는 재신임을 물어서 5년을 더 시무할 수 있다. 재신임에는 공동의회는 과반수이상의 가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임기중에도 개인 사정상(예: 건강, 업무상 출장, 이사 등) 초원지기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에 사퇴할 수 있다. 시무장로의 정년은 만65세이다. (단, 초창기에는 필요시 장로의 정년을 67세로 연장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당회의 전원일치 가결이 필요하다.) 만약 65세이전에 장로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남은 기간에 초원지기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 담임목사와 장로의 사역구분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와의 관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갈등요인은 서로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다. 담임목사의 고유권한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임목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 ▶ 목회방침 및 선교방침의 수립
- ▶ 예배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집회(기도회/부흥회/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및 강사 선정
- ▶ 인사권 (부교역자 선정, 초원지기/목자/목녀 선정 등)
- ▶ 본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부담과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 변경

## II. 운영 규칙

### 인수집사

인수집사는 목자들중에서 선임되며, 당회에서 사전에 후보자를 선정해서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인수집사의 자격은 세례받고, 만 5년이상 본교회에서 “계속해서” 출석한 “무흠한”(책벌 받은 적이 없는) 만35세 이상의 남자 성도 중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충만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충만을 사모하며, 정목자로 3년이상 섬긴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 초창기에는 정목자 대신 대행목자로 2년이상 섬긴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반드시 “인수집사 후보 신청서”를 작성해서 당회에 제출해야 한다. (참조: “인수집사 후보신청서”)

안수집사는 공동의회에서 2/3이상의 표결을 받아야 한다. 안수집사의 주요 직무는 자신이 속한 초원에서 초원지기의 업무를 돕고, 장로의 감독아래 교회 재정을 책임지며(재정 수입, 지출, 회계기록 등). 각종 위원회나 사역부서 등에서 위원이나 팀장 등으로 활동한다. 안수집사의 정년은 만65세이다. 안수집사회와 같은 조직은 따로 두지 않는다. (목장과 초원 안에서 활동)

### **장로 및 안수집사의 휴무 및 복직**

시무장로나 안수집사가 개인적인 사정(예: 질병, 장기 출장 등)에 의하여 부득이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1년간 휴무할 수 있다. 휴무기간은 6개월 단위이다. 휴무를 원할 때는 반드시 서면(혹은 이메일)으로 “휴무 신청서”를 당회장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당회는 휴무여부를 결정한다. 1년의 휴무기간이 끝난 후에는 “복직 신청서”를 서면(혹은 이메일)으로 제출해야 하며 당회의 전원일치(휴무장로를 제외한) 가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복직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도 개인 사정상 복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2년의 휴무 기간을 가진 후에 복직할 때는 당회의 전원 일치 가결 뿐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재신임투표(과반수 이상)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개인 사정상 2년 이상 휴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 면직된다.

### **원로목사**

원로목사제를 두지 않는다.

### **교역자 회의 (Staff Meeting)**

본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회전체의 목회사역 등을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고 계획한다. Staff Meeting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사역부서(주일학교 포함) 코디나 팀장에게 전달되어 시행한다.

### **리더 모임 (제직회)**

본교회 리더(제직)란 모든 목사/목녀, 주일학교 Director/Liaison을 포함하는데 한달에 한번 이상 모여서 기도회, 세미나, 리더들 간증, 재정보고, 교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제직회(리더모임)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매년 서기를 선출한다. 서기는 출석관리 및 회무보고 등의 사무적인 일을 처리한다.

리더모임(제직회)의 성격은 리더들 간에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온 교회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 **서리 집사 및 권사의 선출**

당회에서 필요시 서리집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정목자/정목녀들은 자동적으로 서리집사가 된다. 서리집사는 향존직이 아니며 임기가 일년이므로 매년 당회에서 임명해야 한다.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2/3의 표결을 받아야 하는데, 권사의 자격은 정목녀나 싱글목장의 정목자 중에서 10년이상 “계속해서” 본교회를 섬긴 만50세 이상되는 여자 성도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회가

권사후보로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반드시 “권사후보 신청서”를 작성해서 당회에 제출해야 한다. (참조: 권사후보 신청서)

- ▶ 오랫동안 목장에서 순종과 섬김을 실천하여,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 ▶ 남들을 배려하고, 특히 언어생활에 흠이 없어야 하며(들은 말을 쉽게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 ▶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비밀이 있는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 ▶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권사의 기본 사역은 목사/목녀로 섬기며, 중보기도와 권위하는 사역이다. 권사의 정년은 없으며, 권사회와 같은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목장과 초원 안에서 활동)

##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회원교인으로(회원교인 항목 참조) 한다. 매년 1회이상 정기공동의회로 모여서 예결산을 심의하고 통과하며, 기타 총회헌법에서 정한 일을 결정한다. 임시공동의회는 당회장이 최소 1주일전에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해야 하며, 소집된 후에는 소집공고시 상정된 안건만 다룬다.

## 각종 위원회

본교회는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둘수 있다.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만들 수 있고 또 해산할 수도 있다.

- ▶ 선교위원회: 담임목사의 선교방침에 따라 선교에 대한 중요한 사항 (예: 신규선교사 선정 및 기존 선교사 관리 등)을 결정한다.
- ▶ 예산위원회: 매년 9-10월에 조직해서, 예결산이 통과되면 해산한다. 예산위원장은 당회원 중에서 되며, 위원들을 당회에서 임명한다.
- ▶ 기타 위원회: 건축위원회, 건물관리 위원회 등으로, 필요시 조직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한다.

## 각종 사역부

본교회는 필요한 각종 사역을 위하여 사역부서를 둔다. 사역부서는 중보기도/찬양사역, 선교센터, 교회건물지원사역, 예배/정착지원사역, 정보지원사역, 재정회계사역 등이 있으며, 필요시 적절하게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참조: 사역부 조직)

각사역부 코디(혹은 부서장)는 당회원이거나 혹은 안수집사들이 맡는 것이 원칙이다. 단 재정회계사역 코디는(재정부장) 반드시 당회원이 한다. 각 사역부 코디는 담임목사가 임명하는데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모든 사역부의 임기는 매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로 한다. 단 재정회계사역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목장 사역을 위한 모임

목장은 본교회의 세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본 단위이다. 목장을 중심으로 제자삼는 사역들이 일어나고,

선교지에서 유용한 교회 개척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각 목장이 “목장사역 매뉴얼”에 따라 올바르게 목양사역을 할수 있도록 아래의 모임을 통하여 감독하고 지원한다.

- 초원지기모임: 담임목사는 정기적으로 모든 초원지기들이 함께 모이는 “초원지기 모임”을 인도한다. (참조: 초원지기 매뉴얼)
- 초원모임: 각 초원지기는 정기적으로 해당초원의 모든 목사/목녀들이 함께 모이는 “초원 모임”을 인도한다. (참조: 목장 사역 매뉴얼, 초원지기 매뉴얼)

## 주일학교

주일학교는 연령에 따라 영유아부, CM(Children Ministry), YM(Youth Ministry) 등으로 구분한다. 각 주일학교에는 전문사역자를 도와서 함께 사역할 코디, Director, 교사 등을 임명한다. 주일학교 코디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전체 주일학교 업무를 교회전체의 비전/목적과 맞게 조정하는 사역을 한다. Director와 교사는 코디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코디와 Director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EM

본교회는 영어사역부(English Ministry)를 둘수 있다. EM에 대한 사항은 목회방침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 초원 및 목장사역

본교회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원리를 장로교에 맞게 적용하여 평신도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목장사역을 한다. 본교회에 가장 알맞는 목장사역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담임목사는 아래의 시행지침들을 수시로 검토/보완하여 합당한 목장사역 체제가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초원과 목장의 운영, 목사/목녀의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 목장사역 매뉴얼
- 목장 조직표
- 리더자기 점검표
- 초원지기 매뉴얼
- 은사사용 지침
- 중보기도 지침 등

## 회원교인

본교회에 회원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이 된다. 그리고 각 주일학교, 성가대, 각 사역부 등에서 봉사할 권리를 갖는다. 회원교인이 되려면 아래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 목장에 배정된 다음에 등록을 하고 (등록목원)
- 세례를 받아야 하며(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경우는 다시 본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는 세례로

인정한다.)

- “생명의 삶” 과정을 마쳐야 한다.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교인은 반드시 “회원교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참조: 회원교인 신청서)  
회원교인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배정된 **목장**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 결혼, 성(sex), 성적 성향(sexuality)에 대한 규정

- 본 교회는 창세기 1장 26-27절에 명시된 성경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하나님, 즉 우리의 창조주가 놀랍고 경이롭게 각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두 구별되는 존재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을 완벽하게 반영한다. 한 사람의 타고난 성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 본 교회는 “결혼”을 오로지 하나의 의미로만 규정한다. 즉 결혼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부일체제의 연합이다(창세기 2:18-25).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성적 행위는 오로지 서로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일어난다(고린도전서 6:18, 7:2-5, 히브리서 13:4).
- 본 교회는 어떤 형태의 성적 문란(간음, 음행, 동성애, 양성애, 수간, 근친 상간, 포르노)이라도 죄이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로 간주한다(마태복음 15:18-20, 고린도전서 6:9-10).
- 본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의 기능과 참 됨을 보전하기 위해 어느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본 교회에 의해 고용된 모든 분들, 자원 봉사자들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및 모든 회원교인과 등록교인은 결혼, 성, 성적 성향에 대한 규정에 동의하며 준수해야 한다(마태복음 5:16, 빌립보서 2:14-16, 데살로니가전서 5:22).
- 본 교회는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속과 회복을 믿는다(사도행전 3:19-21, 로마서 10:9-10, 고린도전서 6:9-11).

## 교회 건물 사용 규정

- 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희생으로 세워졌다. 그러므로 본 교회는 건물 시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제를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열망한다.
- 비록 교회의 시설들이 일반 대중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증인으로써, 기독교 박애 정신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서 교회 시설들은 승인된 비교인들에게 한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시설 사용은 교회의 믿음과 도덕적 가르침에 대립되는 신념이나 행동들을 지지하거나, 행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에게는 허가되어지지 않는다. 교회의 믿음과 가르침들은 PCA 헌법에 요약되어 있다. 또한 교회 시설들은 교회의 믿음과 도덕적 가르침과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될 때도 사용될 수 없다.
- 당회는 교회 시설들의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자가 된다.
- 이 제한적 시설 사용 규정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 첫째, 교회가 그것의 믿음에 반대되는 활동이나 신념에게 물질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시설들이 교회의 믿음과 상반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

활동을 물질적으로 협조하는 것이고 교회의 믿음과 종교적 의식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고린도후서 6:14, 데살로니가전서 5:22).

- 둘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게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교회 사역자들과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그 메시지를 양심적으로 보존해 나가야 한다. 교회의 믿음과 반대되는 신념을 표방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교회 시설 사용을 허용하는것은 교회가 전달하고자 애쓰는 메시지에 심각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교회 시설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교회가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념이나 의식에 동의한다고 교인들이나 지역 사회가 인지함으로써 교인들과 지역 사회에 혼란과 스캔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 그러므로 교회의 믿음과 상반되는 신념들을 가지고 있거나, 지지하거나, 제안하거나, 혹은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어떠한 교회 시설 사용도 허락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교회의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교회는 모든 재산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되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골로새서 3:17).

## 기타

본교회의 모체는 미국장로교(PCNA)헌법이다. 그러나 이 운영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은 운영규칙이 우선한다. 그 이유는 한국장로교회의 전통과 목장사역의 원리를 본교회에 알맞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담임목사는 여기에 언급된 각종 세부적인 첨부 사항들(예: 리더 자기 점검표, 각종 신청서, 목장사역 매뉴얼, 은사사용 지침, 목장조직표 등)을 교회 사정에 알맞게 언제나 갱신할 책임을 진다.

이 운영규칙은 실행위원회(당회)의 전원일치로 채택된다. 채택된 규칙은 리더회의(제직회)에 상정하여 2/3이상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추후에 어느 항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회원 전원일치로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된 사항은 리더모임(제직회)에 상정하여 2/3이상의 찬성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3년 중에 본 운영규칙을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2/3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변경은 당회의 전원 일치와 리더모임(제직회)의 2/3이상 찬성, 그리고 공동의회 2/3이상 찬성을 받아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본 “조직 및 운영규칙” 제1부 “당회 조직”에 대한 규정, “결혼, 성, 성적성향에 대한 규정”, “교회건물 사용 규정”은 변경할 수 없다. (끝)